

第12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4月25日(木) 10時05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2002年度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2.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

審査된案件

1. 2002年度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安載弘議員 外 5人 發議) 13面

(10時05分 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李炳滿 財務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짝 핀 진달래와 개나리꽃에서 봄내음을 느낄 수 있고 삼라만상이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약동의 계절 새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구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제3대 의원 임기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19만 종로구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우리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행정에 더욱 전념하시어 구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함께 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주요한 안건들을 심사하시게 되겠

습니다.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선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景良 議事擔當主任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4월 12일 종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2002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2년 4월 19일 安載弘議員 外 5人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건의요구(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景良 議事擔當主任! 수고하셨습니다.

1. 2002年度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鐘路區廳長 提出)

(10時08分)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1항 2002年度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을 상정합니다. 李炳滿 財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炳滿 안녕하십니까? 財務局長 李炳滿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安載弘 委員長님과 吳弼根 幹事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가칭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구립운동장 건립부지 매입 2건입니다. 먼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인 사직동 산 1-48 외 1필지는 면적이 3,826㎡이며, 소유주는 산림청과 국방부로서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이며, 지목은 임야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구민 체육활동 공간이 절대 부족한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며 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7,5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2002년도로 4억 37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운동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운동장 건립 예정부지는 구 혜화초등학교 이전부지로서 초등학교는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며, 위치 및 면적은 명륜1가 1-27 외 4필지로 토지 14,710.5㎡이며, 건물 6,138.28㎡로서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 소유의 토지입니다. 우리 구 숙원사업인 구립운동장 건립은 체육 및 각종 행사장소로서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우리 구민의 체력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에 반드시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03억 7,000만원으로 향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2年度 區有財産 管理計劃 變更計劃(案)

(鐘路區廳長 提出)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李炳滿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2년 4월 12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요청 배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인 2001년 11월 25일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당시에는 대상재산이 없어 의회의 승인 사항이 없었다가 지난 3월 29일 5·6가동의 긴급한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1차 변경계획이 있었으며, 금번은 2차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신청은 재산총괄청인 재무국장이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별회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관 국장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 주차장 매입건은 건설국장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청내용은 공공시설부지의 취득 건으로서 매입 용도별로는 2개 사항이고 구입 재산은 토지 7건,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재산내용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매입재산은 사직동 산1-48 외 1필지로서 소유는 국이고 관리청은 산림청, 국방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48이 971평, 1-56이 187평으로서 약 1,000여 평 가까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매입예산은 3억 7,400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구립운동장 건립을 위한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명륜1가 1-27번지 외 4필지로서 소유는 서울시교육감 소유와 그 다음에 국유지로서 관리청이 교육부 재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3억 7,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부지 입지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동 산1-48 외 1필지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사직로에서 인왕스카이웨이로 진입하여 약 200m 올라가면 좌측편에 그러니까 황학정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사회과학도서관이 있고 도로는 6~8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현재는 유휴지 상태로써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명륜1가 1-27 외 4필지 구립운동장 대상부지는 구 혜화초등학교 부지에서 혜화초등학교가 혜화여고 자리로 이전함에 따라 폐교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와 명륜3가동, 혜화동 경계지점에 있으며, 진입도로는 4m 정도입니다. 여기의 활용계획은 종로문화체육센터는 돔형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지상1층, 지하2층 시설로서 연면적은 847평 건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7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립운동장 건립계획입니다. 건립형태는 노천운동장 형태로 하고 부대시설을 한 개 동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해서 120억 정도 소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대상재산은 국유 및 시 교육위원회 재산으로서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시의회의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며, 취득재원도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년부나 보조금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사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립운동장이나 종로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사직동 산1-48 입야 산림청 부지에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까마는 저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거기에 문화체육센터를 지으면 대충 어떻게 지하 몇층, 지상 어떻게 한다는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주관과에서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 규모를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해서 연면적은 6,756㎡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고로 주요시설은 수영장이나 소극장, 주차장, 체육관, 문화전시장, 휴게실 등이 들어갈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있네요?

○財務局長 李炳滿 예, 물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있으면 우리 위원들 볼 수 있게 자료를 주고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심도있는 질의도 하고 하겠다는 위원장 얘기하고 자료 제출한 부분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구상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왜 안 줍니까? 숨길 이유가 있습니까?

○委員長 安載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과에 관련된 직원한테, 과장한테 자료가 있을까요?

○財務局長 李炳滿 보조자료 있습니다. 다 보드렸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지금 전문위원의 활용계획에 종로문화센터 건립형태와 李炳滿 局長께서 답변하신 건립형태가 달라요.

○李炯述委員 지상3층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요?

○委員長 安載弘 위원회 보고한 내용 중에서 문화진흥과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건립형태가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지상1층에 지하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진흥과의 건립추진 계획서에는.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李炯述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李炯述委員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는 지상1층 지하2층인데 국장님께서 알고 있기는 지상3층 지하2층이라고 했잖습니까? 지금 지상1층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거든. 그런데 국장님 얘기로는 지상3층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건이 상정돼서 거론할 때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때 지상3층 얘기가 나왔거든.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지상1층, 지하2층으로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넘어갑시다.

○財務局長 李炳滿 저도 문화진흥과한테 자료를 받기를 지하2층에 지상3층으로 받았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렇죠? 듣기를 3층으로 들었는데

○財務局長 李炳滿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전문위원 지상1층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아마 전문위원한테 간 자료가 2000년도 최초의 자료가 간 것 같고 그 후에 검

토하면서

○李炯述委員 얘기가 안되는 게 전문위원한테 보내줄 때 똑같은 걸 보내줘야지

○財務局長 李炳滿 문화진흥과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李炯述委員 어떻게 증대한 건을 의회에 보낼 때는 지상1층으로 보내주고 집행부에서는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의회를 조롱하는 거지, 무슨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를 중시한다고 하면 이러한 자료를 보내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남산 앞에 있는 아파트 허는 거 보셨죠?

○財務局長 李炳滿 예.

○李炯述委員 서울이라는 저걸 잘 가꾸려고 하는 서울을 뒤에 가보니까 산 위에 수목도 있고 공원 뒤에 이걸 완전히 가리도록 3층으로 올려 가지고 공원이란 공원은 다 일부는 헐어내면서 일부는 고층으로 짓는 이유가 뭐요?

○財務局長 李炳滿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거기다가는 고층을 못 올립니다. 또 인근에 사회과학도서관같은 데는 6층건물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3층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李炯述委員 옆에 6층, 5층 기이 지어져 있는 것을 거기다 견줄 게 아니라 남산에 있는 아파트도 안되겠다고 해서 시에서 헐어내지 않습니까? 공원을 가리고 지금 시의 한 방침은 기이 해놓은 것도 헐어내는 그런 입장에 새로 짓는 걸 공원을 가리게 고층으로 올린다는 얘깁니까? 지하를 보니까 충분히 지하3층으로 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지층으로 더 내려가고 지상 올라가는 부분을 낮춰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공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역시 저 건물 지어났을 때 거부감이 없는 것을 해야지

○財務局長 李炳滿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7일날 서울시도시계획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를 하면서 스카이라인 맞춰서 한다고 해서 지상3층으로 심의, 통과된

것입니다.

○李炯述委員 지상3층이 좋다고 해요?

○財務局長 李炳滿 심의 통과된 사항입니다.

○李炯述委員 여기서 종로구청에서 서울시의 공
원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좋다고 하더라도 종로가
꾸기는 종로구청이 해야 됩니다. 지층으로 한층
더 내려 가 가지고 3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
이 지상으로 올려 가지고 공원을 가리고, 뒤에 공
원을 참 이쁘게 가꾸야 할 공원을 왜 막히게 합니
까? 그것은 좀 진행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국장님은 3층으로 올
리는 것이 테두리 전체 봐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3
층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지상으로 덜 올라가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더 올라가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물론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단계, 설계단계기 때문에 다소 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질이나 토질
등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
층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저희가 지하
층을

○李炯述委員 국장님! 만약에 3층을 공원 바로
공원 턱받이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3층을 했을 때
인왕산이고 둘러가면서 3층 짓자고 했을 때 거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곳에 만약에
해가지고 인왕산 밑에다가 턱 밑에 가가지고 4층,
5층 올리는 것은 공원 가리는 것은 별로 좋은 일
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형 자체가 지
하로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는 지형인데도 지상
으로 더 많이 올리는 것은

○財務局長 李炳滿 그것은 개략적으로 하고 일단
3층으로 서울시에 심의 통과된 사항인데 가능하
면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李炯述委員 얘기가 안되는 얘기가 여기서 3층
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놓고 우리 재무건설위
원회 심의, 통과를 받아놓고 또 한층 늘린다는 얘
기는 안 맞는 얘기고 우리 위원들 전체 느낌이 왜

의회에다 지상1층으로 한다고 자료를 넘겨놓고
집행부는 왜 3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
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국장님! 잠깐만
요, 우리 여기의 재무건설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단층으로 1층으로 하겠다고 올린 것이 왔으니까
일단 1층에 대한 여기 토론을 심의를 하도록 합시
다. 그래놓고 만약에 1층으로 자료를 1층을 하겠
다고 해놓고 집행부에서 3층으로 거론해나가면
의회를 집행부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거란 말
입니다. 거기에 따른 답을 주십시오.

○財務局長 李炳滿 위원님! 저희가 어떤 설계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
리가 건립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 심의, 통과되어야 하고 여
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획이
일부 수정될 수가 있고 보완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축소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
재는 이러한 시설을 거기다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약에 토지를
매입해놓고 또 다른 좋은 시설이 들어가야 할 사
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또 건축계획은 일부 변
경이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2000년
도부터 이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소규모로
생각을 했는데 일부 좀 확대해서 2층에서 3
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료
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를 더 확보한다든지 또 면
적을 많이 늘려야 될 경우에는 지하층을 더 많이
판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단 지
상으로는 3층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서울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거
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국장님! 분명히 의회에 전문위원
자료에는 국장님이 단층으로 1층으로 한 2000년
도 자료를 넘겨줬다고 했는데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상3층, 지하2층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왔고 종로구청에서 3층으로 하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한 거지 서울시가 단층으로 올렸는데 3층으로 해라 해가지고 심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체가 의회를, 단층으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온 것은 의회를 경시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李 局長님! 지금 자료가 李炯述委員님도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로 여러분들이 재무국에서 한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행정관리국 소속 문화진흥과에서 종로비전 5개년 계획 속에 구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계획에는 지금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잡더라도 약 17억이면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종로문화체육센터 추진계획 제출한 유인물에 보면 총 사업비가 116억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계획을 짰던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그 변경된 내용을 의회에 통보해줬어야 하고 오늘 제안설명시에 그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 내역을 보면 종로문화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공사비가 17억 정도로 잡혀있는 것을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준 유인물을 보면 사업비가 모두 116억이 들어가고 특히 사업비 내용을 현황에 들어가면 그것은 120억이에요. 5억 8,000, 6억, 4억, 104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진흥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위원님들이 혼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주요사업비가 17억이고 여러분들이 준 유인물에는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안)은 11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토지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공원을 조성할 때도 또 기왕에 집행된 예산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문화진흥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출석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 건에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구비가 86억 6,000만원을 상정하고 있고 시비가 약 17억 6,000만원이라고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모두 100억 이상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큰 일인데 이것 지금 통계자료도 안 맞고 하는 사안을 그대로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李炯述委員 委員長!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지상1층 지하2층으로 한 부분하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 현장에 갔을 때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지상3층으로 한다고 해서 지형적으로 봐 가지고 지상1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하로 내려올 수 있으면 지하4층으로 하든 지하3층으로 하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뒤의 공원 자체도 그런 대로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제대로 잘 가꾸는 데에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저걸 보면 지상1층, 지하2층이고 바로 그 밑 사업비 부분의 17억 중에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17억인데 토지매입비는 3억 8,000만원, 공사비가 3억 2,000만원 해가지고 17억 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기에 대해 왜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냈는지 局長님이 아시면 답을 주시지요. 17억이면 토지 바로 밑에 토지매입비가 3억 8,000만원, 공사비가 13억 2,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7억인데 여기는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해놨거든.

(○蔣昭秀 專門委員 關係官席에서-그건 아까 별도로 포함시켰어요.)

알겠습니다. 그 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 열 때마다 자주 거론한 점이 이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그 재료를 항상 제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역시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그때 따로 대화를 나누겠다. 당연히 이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걸 위원회에다 제시해주는 게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局長님! 어떻

게 생각하세요?

○**財務局長 李炳滿** 저희가 땅을 매입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규모나 용도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정이 되면 그걸 의회에 바로바로 보고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당초에 지하1층에서 지상2층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지하2층하고 지상3층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한 일이지만 財務局長이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들고있던 것은 종로관내에 구립운동장, 체육시설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립운동장은 기상청 자리이다 한다고 그랬거든. 과거에 집행부의 장 얘기가 기상청 옮겨간 그 자리도 종로구청이 구립운동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財務局長 李炳滿**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李炯述委員** 또 혜화초등학교 이 자리도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하겠다. 다행히 본 위원도 전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 종로는 다른 구하고 틀린 점이 과거에 종로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 교육입니다. 전통문화, 교육. 이 종로에 있던 좋은 학교들은 전부 강남으로 다 내보냈거든. 혜화초등학교도 아주 역사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이런 걸 종로구청에서 사 가지고 종로구 재산을 만들면 참 좋은데 여기에다가 영재교육할 수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 과학교등학교 그런 걸 내지 말고 영재교육 이런 것을 해서 이 부분을 전부 사 가지고 여기에다 체육시설을 하겠다, 구립운동장을 하겠다 하지말고 전부 머리를 좀 바꿔 가지고 여기에다 구립운동장을 하려면 기상청 같은 곳을 사 가지고 영재교육 그런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머리를 돌리면 안되겠어요? 局長님!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그 문제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구청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구립운동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땅을 물색하고 수없이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부지가 없어 가지고 이번 혜화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서 일차로 그걸 다목적 운동장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종로구가 토지여건만 된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이 혜화초등학교를 매입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아무튼 그 문제는 서울시에 최대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을 지을 때에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집행부가 항상 우리 의회에다 자랑하는 점은 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서울시 예산을 종로가 많이 갖고 왔다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주 미미하거든. 공개석상에서는 종로구가 제일 많이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 알아보니 종로구의 집행부가 그렇게 많이 가져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종로구라면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이 집행부가 조금 노력을 하면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혜화초등학교에 구립운동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둘러서 기상청 부지도 종로구 소유니까 종로구민 전체가 이런 시설은 종로구에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걸 연구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하는 걸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안 좋겠어요?

○**財務局長 李炳滿** 지금까지는 강남 위주로 많이 사업이 추진되어 강북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북에 많이 투자한다고 서울시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또 아마 서울시장르

앞으로 오실 분들도 강남보다는 강북 개발에 더 중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종로를 개발하는 데 많은 사업비를 저희가 할애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局長님이 기상청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한 점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기상청 부지는 제가 재무국장으로 오기 전부터 서울시하고 수차 가서 확인도 했고 또 일부만이라도 저희가 기상청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무척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거기 시설은 경희궁하고 인접된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서울시에다가 교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문화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종로하고 전혀 별개의 시설이 아니고 종로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만약에 기상청 부지를 종로구청이 매입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구립운동장을 할 겁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글썽요. 구에서 지금 매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당초에 그 토지를 일부만이라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혜화초등학교에 구립운동장을 설치하기 전에 이미 구상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기다가 구립운동장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혜화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李炯述委員 委員長! 종로문화센터 이 부분의 부지를 매입하면 집행부가 지금까지 구상한 게 있을 겁니다.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재료를 제출해주면 각 위원님께 그걸 배부해 주시고 배부해 주시고 난 뒤에 다시 보충질문 하도록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알겠습니다. 지금 李炯述委員

님이 오랜 시간 동안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민의 건강증진이나 문화체육 공간의 확보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무엇이나 하면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총 소요비용이 116억 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면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예산도 구비하고 시비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많이 구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86억이라는 돈이 구비로 조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조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정립해서, 그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49分 會議中止)

(10時55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金福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종로구는 유난히 집행부의 수장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관계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하고 인접되어 있지요? 초등학교 자리에

○財務局長 李炳滿 네. 성북하고 성곽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인접되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성북구 토지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네. 우리 종로구 토지만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리고 국장께서는 우리 종로구의 여러 가지 운동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시설한다는 것은 저도 동참하고 대단히 환영합니다만 우리 종로구의 열악한 예산 속에서 이 거대한 꿈을 가지

고 종로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여기 체육시설에 수영장을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로구에 수영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동사무소까지도 수영장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구립운동장에는 수영장시설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종로문화체육센터에는 수영장을 시설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金福同委員** 우리 종로구는 지난해에 조금 전에 선배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까만 각종 기부금이나 성금 이런 걸 많이 받아왔다고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알아본 결과 종로구가 서울시로부터 가져온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 모두가 우리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장과 우리 종로구에서 뽑힌 시의 각료 의원들께서 열심히 종로구 살림을 해서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 것 아닙니까? 소상히 밝혀보십시오.

○**財務局長 李炳滿**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 관계는 예산파트가 있기 때문에 타구와의 관계

○**金福同委員** 局長님! 본 위원이 종로5~6가 대학로에서 충신시장 간 20m도로시설 계획이 있는데 금년 예산이 단 10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한 후에 서울시에 가서 제가 20억을 해서 추가로 가져온 걸 알고 계시죠?

○**財務局長 李炳滿** 글썄요. 예산을 주관하는 데에서는 알겠지만 저는 아직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여러 가지를 모르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현재 명륜동1-27 4필지에 운동장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다는 것을 동료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가 미비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거예요. 예산편성이나 이런 용도가 나오지 않고

현재 여기 진입로가 4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시설을 하고 체육운동장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도 언급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여기를 들어가다 보면 도로에서 여기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형차도 겨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그런 시설을 하기 전에 진입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게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4m도로로 어떻게 그 체육시설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겠습니까? 4m 도로를 10m를 만든다든가, 20m를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이 확실히 가지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주관 관에서는 별도 계획이 없는 모양인데 아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운동장시설을 하려고 하면 대형차도 다녀야 하고 운동장을 할 때에는 주차장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것을 철저히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여기 진입로 도로가 좁고 또 운동장 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 종로구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될텐데 4m도로면 승용차도 겨우 들어가요. 이 자체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운동장을 4m도로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알겠습니다. 학교 정문 앞까지 가서도 승용차도 돌리기 힘듭니다. 운동장 내에 들어가서 차를 돌려서 나와야되는데 이런 상태로 두면 차량의 진입이 아주 어려울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잘 해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정확히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위에 성곽이 있지요? 이게 동대문 뒷담으로 해서 꼭 올라간 성곽이 거기까지 이어져있는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그렇습니다. 성곽이 그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면 성곽으로 인해서 종로구는 서울시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財務局長 李炳滿**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곽으로 인해서 종로구민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財務局長 李炳滿**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성곽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분되는 면도 있고 일부는 불편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金福同委員** 이 서울시 문화재 성곽때문에 종로구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축물 높이나 허가 이런 등에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시문화재위원회에 연락해서라도 이 주위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 보면 지상1층, 2층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시설물 자체도 영구적으로 종로구민과 서울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해서 재조정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李炳滿**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단지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문화재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구립운동장을 만들거나 뭐 문화복지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에서 꼭 동부, 중부 해서 서부에서 문화복지센터를 꼭 지어야 된다는 거 또 그 너머에 교남동 동청사를 짓는데 풀장까지 한다고 해서 이걸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왜냐! 풀장을 지으면 물값은 누가 내고 관리요원을 다 뉘야될 것 아니

야? 그런데 이게 동네마다 만든다는 것이 맞지 않는데 꼭 필요성을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답을 좀 해주십시오.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양해가 된다면 문화진흥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安載弘** 답변하세요.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미비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토지매입 매각의 관리차원만 다루다보니까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됐었는데 못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사직문화센터 건립배경을 보면 처음에는 종로문화센터를 가지고 사직문화센터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3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동부지역에는 잘 아시겠지만 구민생활관, 구민회관이라든가 거기에 복지시설이 많은데 서부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적다 해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다각적으로 물색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종로에는 빈 땅이 없습니다. 사직공원 물린 땅을 물색을 하게 됐고 그동안 쪽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에 저희들이 타당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공원위원회 전부 거쳤습니다.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좋다, 3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 책정할 때 이미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의원님들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은 시민행정위에서 상당히 걸러졌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러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립대 용역을 줘서 작년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러한 말씀의 지적이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지금 사직문화센터가 많이 116억 정도 어쨌든지 추정치입니다. 116억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구립운동장 부

지도 120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가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문화관광부 전부 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종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에 협의해서 30억을 올해 지원해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시에서 내년까지 21억을 지원, 올해 4억을 지원해주고 내년엔 17억 6,000 해서 21억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委員長 安載弘** 잠깐만요, 문화진흥과장! 말이죠,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가요. 가는데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설위원회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이 2001년도 12월 28일날 사직문화센터 사업타당성 용역시행을 해서 시립대학에서 용역을 쥘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2건의 안전을 심의한다고 알고 계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신다든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해놔야지 지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얘기하는데 옳지 않아요.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죄송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적어도 문화진흥과장이 담당 소관과장으로서 이런 큰,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자금 조달계획을 갖고 어떤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면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굳이 설명 안해도 되잖아요. 죄송하다는 소리 안해도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맞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앞으로 120억, 110억 근 230억이나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근 3~4년 내에 투입되어야 하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 가지고 아무런 보고도 안하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니까 와서 이것이 이렇다 얘기를 하니 소위 납득할 수 있는 일이나 이겁니다.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죄송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타당성은 조사가 되었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시에 최대한 해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토지매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玄壽漢委員**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나 문화관광부에서 얼마 건립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 사는데 우리 구에서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가지고 당장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것만 재무국장이 답변하면 되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70%가 안넘는데 그것 가지고 공무원 월급만 주면 끝나는데 어디서 나서 110억 이상 당장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뭘로 채워 가지고 하려고 이것을 올렸느냐?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지금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3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玄壽漢委員** 그것은 종로문화체육센터고 구립운동장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구립운동장 그것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위원님! 일단 문화진흥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니까 우선 종로문화체육센터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구립운동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설명을 하세요. 사업계획을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예, 매입계획으로 우선 3억 7,600만원을 작년 예산에 저희들이 책정을 했다가 예산 책정할 때 이미 논의가 됐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을 안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행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산림청이나 국방부의 국무위의 심의절차 등을 거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청장님 계실 때도 땅이야 사놓으면 막말로 못짓는다 해도 땅값이야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건립비 문제는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큰 재정

부담은 있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땅만 매입하게 해주시면 그 땅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까

○**委員長 安載弘** 지금 말이 잘못되어 가는 게 구비예산이 86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7억이 들어가는 데 어떻게 우리 부담이 적어요? 종로문화체육센터에 구비가 86억이고 시비가 17억이면 우리 부담이 몇 %입니까 80%에 육박한데 과장님 말씀이 논리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우선은 시비 21억 정도 확정을 받았고 80억도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올해 30억을 내려보내기로 한 것이고 추가로 해결 수 있으면 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여기 준 내역서를 줄 때 총사업비가 11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비가 94억이고 시비가 26억으로 분류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구비의 예산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구비는 94억, 1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내역을 써줬으면 구비의 부담이 낮을 거 아닙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막을 쓰지 못했습니다. 내막적으로 94억이 전부 구비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30억은 올해 내려보내준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鄭廳長님이 가서서 20억 해서 50억 정도는 확실합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 공식적으로 거론을 못했기 때문에 구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질문 안하겠어요.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李炳滿 財務局長님! 그리고 林秉義 文化振興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玄壽漢委員님! 토론하십시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지금 2002년도 추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자료가 전부다 맞지 않아요. 3선까지 하면서 나는 이러한 계획을 봐가지고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물론 구립운동장이고 서부문화체육관 짓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 나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이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계획 이러한 것을 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담당부서인 재무국에서는 땅 토지를 사놓고 몇년 지나면 땅값 올라가니까 사놓고 보자. 손해날 것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여건에 맞지 않고 심의하는데 굉장히 저저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 서부측에 종로문화체육센터 짓는다는가 구립운동장을 건립한다는가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당장 우리 구정 여건에서 생각해 가지고 하자 하지 말자 보다는 100년을 내다보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충 여기서 봐도 부지 매입하고 건축비용하고 해서 한 250억 이상 들지 않겠나, 시행할 때 변경이 되겠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나 재무국에서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또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주셔서 가지고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은 금번 회기에서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심사숙고하는 게 어떤가 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이 자료 봐 가지고는 갈피를, 그렇다고 문화진흥과장이 구두설명하는 것 가지고 그걸 믿고 단안을 내리기는 너무 벅합니다. 240억이라는 돈을 최종 생각을 하는데 그이상 더 들어가야 된다면 아까 金福同委員님 말씀하셨지만 구립운동장 건설은 노푼 4m 가지고는 도저히 진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에 무슨 경기를 한다든지 하면 차량이 수없이 올 것이고 주차장 문제도 뒤따라야 될 겁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올려주면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해주는 걸로 하고 보류했으면 어떤가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보류동의(안)에

재정이 있습니까?

(「재정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정이 있었으므로 玄壽漢委員님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의(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도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

(安載弘議員 外 5人 發議)

(11時07分)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을 상정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1時28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는 관계로 吳弼根 幹事님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가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丁炳煥委員님께서 의사진행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 委員長 丁炳煥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丁炳煥 재무건설위원회 丁炳煥委員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이 연장자 의원으로서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그러면 安載弘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安載弘議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건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 조례건의 요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전을 발의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말씀을 드리면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선진사회의 장묘문화 변천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2001년 1월 12일자로 장사등에 관한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매장문화에서 화장 및 납골문화로 시행하여 불필요한 국토의 훼손과 인적물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등에 별다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도시계획차원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건축물이나 용적률 등에 상당한 사권의 제한을 가하면서까지 제도화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으므로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는 납골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취지와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도록 건의 요구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6조제2항제3항 가목의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를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연경관지구가 아니고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건의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이와 같이 건의 요구(안)대로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아울러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

(安載弘議員 外 5人)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理 丁炳煥 安載弘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玄壽漢委員長님! 질의하십시오.

○玄壽漢委員 조례개정건의요구를 하신 安議員께 여쭙보겠습니다. 납골당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가로, 세로 해서 4~50cm 정도 해서 화장을 한 이후에 유해가루를 일부를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냄새라든가 경관, 모양같은 것이 그렇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제가 일본을 쪽 한바퀴 돌아봤을 때 일본 도심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즉 납골당이죠. 그래서 뭐 반평, 부잣집은 한 평 정도 해서 탑같은 걸 세워 가지고 거기다 위패를 모시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세검정에 살다보니까 평창동 사유신이 거기에 납골당 문제로 반대이유를 써붙이고 했는데 그걸 보고 저도 생각한 바가 많아요. 그러면 납골당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가 또는 냄새라든가 모양이 있다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요구안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安載弘議員 기본적으로 조례개정건의요구를 낸 안은 평창동이나 부암동 주거밀집지역에는 기존에 있는 사찰이나 종교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종교시설 사찰이나 교회 안의 주차장이나 도로의 폭과 관계없이 납골시설을 신고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도 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유스럽게 납골시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장묘문화가 권장되고 그렇게 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관습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주택가 내부에 납골당이 들어선다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있고 지금 현재 일종전용지구 풍치지역 내에 납골시설이 들어온다는 문제로 인해서 세검정 지역 일대 주민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조례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시행된 것은 불과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졸속적인 입법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도출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차후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도라는 것이 시행되는 즉시 어떤 반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불거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된 것은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玄壽漢委員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납골당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安載弘議員 기본적으로 기존에 보시면 시립장묘, 그러니까 납골시설들이 외각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심의 주택가나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그러니까 즉 주거가 밀집된

지역에서 일정지역 떨어진 곳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玄壽漢委員 미국에 가서 살펴봤을 때는 납골당을 안치한 그 납골당 경관 내에 전부 공원화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놓고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걸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토지가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지금 화장문화가 늘어나고 납골당시설을 자꾸 증축해야 될 입장에서 저희 집안이 불교집안입니다만 절에 모시는 건 대개 위패만 모셨지요. 그래서 때마다 가서 제사나 이런 걸 지냈는데 지금 이것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세검정, 평창권 전체가 소규모까지 하면 한 70~80군데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도 250개가 넘었는데 그럼 여기서 다 한다 그걸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조례개정을 건의하시는 安議員께서 이런 곳은, 주거지역은 좀 안된다, 빼달라 하는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워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安載弘議員 그건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평창동이나 부암동, 구기동 또는 이쪽으로 올라와서 청운동, 가회동, 사직동 쪽은 풍치지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일종 전용주거지역 내에는 또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굉장히 주거환경이 좋고 생활환경이 좋은 곳인데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송인동, 사직동, 무악동 또는 가회동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에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종교시설 내에 납골당을 시설한다면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사찰에서 음으로 했는데 그걸 양성화시켜준다면 그것이 과연 주민들 정서에 맞고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玄壽漢委員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게 자연경관지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를 들으면 도선사나 이런 데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는 구기동 산꼭대기 승가사 같은 데는 해놓을 만 하거든.

○安載弘議員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니까 이걸 고쳐 가지고, 만약에 고쳐진다면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그런 데까지 제약을 받는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安載弘議員 아니죠. 그런 데까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玄壽漢委員 다만 자연경관지구 내에

○安載弘委員 여기에 자연경관지구가 들어가는 것은 일종전용지역 내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그게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가사나 관음사, 문수사, 도선사나 이런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납골을 해야지요. 거긴 어차피 주택가에서 상당히 떨어져있고 산중에 있는 사찰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는 권장이 돼야 합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것은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3호 가목에 보시면 일종전용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의 자연경관지구를 말하기 때문에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丁炳煥 다른 委員!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安載弘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건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종료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2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安載弘 吳弼根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金福同

○委員 아닌 議員

安載弘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李炳滿
文化振興課長 林秉義